

심사보고서

순번	의안번호	발의·제안자 및 제출자	의안명
계			1건
1	제3052호	고성군수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성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052호)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1. 9.

고 성 군 수

나. 회부일자: 2026. 1. 9.

다. 상정·의결일자: 2026. 1. 21.

산업경제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건설과장 김성영)

가. 제안이유

○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탁기간(2021. 5. 1. ~ 2026. 4. 30)

만료일 도래 및 시설부지 확장에 따라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한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위탁근거

1)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2)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다. 주요내용

1)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설치일	시설규모(m^2)			비고
			건축면적	주기면적	주기면수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127-3, 125-1	2021. 3.	100.55	10,500	100	

2) 위탁개요

- 위탁 운영기간: 2026. 5. 1. ~ 2031. 4. 30.(5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위탁범위
 -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및 관리동(부속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기타 고성군이 정하는 사항

라. 기대효과

대형기기인 건설기계를 외곽 공영주기장으로 분산 주기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으로 주민불편 해소

마. 향후 추진계획

- 1) 2026. 2.: 수탁자 공개모집
- 2) 2026. 3.: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
- 3) 2026. 4.: 민간위탁 협약 체결
- 4) 2026. 5.: 민간위탁 실시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조호철)

가. 대상시설 개요

-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대상 시설물 현황

소재지	준공일	시설규모(m ²)			비고
		건축면적	주기면적	주기면수	
고성읍 무량리 127-3, 125-1번지	2021. 3. 2025. 4.	100.55 (사무실)	10,500	100	cctv 2대 가로등 10본

- 위탁 운영기간: 2026. 5. 1. ~ 2031. 4. 30.(5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위탁범위

- 공영주기장 및 관리동(부속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공영주기장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고성군이 정하는 사항

〈現 고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지난 5년간 위탁업체 현황〉

위탁운영체			위탁기간	위탁규모	비고
위탁체명	위치	회원수			
(사)건설기계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경남고성지회 제영래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127-3	109명	2021. 5. 1. ~ 2026. 4. 30.	-사무실 100.55m ² -면적 6,422m ²	

나. 종합 검토의견

- 건설기계 불법주기 예방, 안전사고 저감 및 교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영주기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6. 4. 30. 만료에 따라 신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사항임

○ 검토결과

-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인력화보, 인건비 및 관리비 증가 등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전문성,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음
- 「건설기계관리법」에 관련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하여 이와 같은 사유를 종합해 볼 때, 본 사무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영주기장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6. 1. 21.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